



환경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30.(목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3. 3. 30.(목)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최한창 (044-201-6390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현 (044-201-6397)

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

- 지역 상생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한 발짝 더 -

- ☐ (낙동강수계법) 영향지역 내 지역상생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
- ☐ (환경오염피해구제법)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조사 명령 등
- ☐ (자연공원법)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가치증진 추가

☐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'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낙동강수계법)', '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)', '자연공원법' 등 3개 환경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,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.

☐ 먼저, '낙동강수계법'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.

○ 이를 통해 대구·부산·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- '환경오염피해구제법' 개정을 통해서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.
- 또한,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, 보험에 인·허가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, 미 이행시 벌칙·과태료를 부여하여 환경오염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.
- 끝으로 '자연공원법' 개정을 통해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·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하여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.
-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'낙동강수계법'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,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. 끝.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1	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	○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·군에서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○ 낙동강수계기금의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함	○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영향지역 주민의 신뢰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	공포 후 6개월	물정책총괄과 김고웅 과장(7140) 김금임 사무관(7152)
2	자연공원법	○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·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	○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 도모	공포 후 3개월	자연공원과 배연진 과장(7316) 최진호 사무관(7326)
3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	○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, 보험을 통한 보상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 요구 또는 직권 실시 ○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자료제출 의무(사업자→보험자)를 명확화 ○ 배출시설 추가 등 변경 인·허가 시 기존 보험 그에 따라 변경 - 미반영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○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거 마련	○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보험사에 손해조사 명령 혹은 직권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 ○ 환경오염사고시 보험가입 위반이 되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, 환경오염피해자가 차질없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○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·점검을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	공포 후 1년	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이은혜 사무관(6813)